유학생 동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 정 2018.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동문을 위해 설치하는 **「유학생 동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 통할) 센터의 제반 업무는 국제교류처장이 총괄한다.

제3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국제교류처 처장이 겸임하거나 국제교류처 처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센터 근무 정원 및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등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처 처장이 본교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분장업무) 센터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졸업자 외국인 유학생 동문회 조직을 구성하여 기졸업자 외국인 유학생 동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예비졸업자 외국인 재학생에게 애교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유학생 교우시스템을 만들어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 교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유학생 동문회 사이트를 개설하여 본교를 홍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우송대학교 유학생 동문회기금'을 조성하여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원한다.
6. 교내간행물 <우송인>을 발간하여 기졸업자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사례 담아 본교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인다.
7. 외국인 유학생의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설립하여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8. 기타 국제교류처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세칙) 국제교류처 처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